

재 정 신 청 서

신청인(고발인) : 참 여 연 대

(담당 이재명 팀장)

피고발인: 고 석 (육군 대령)

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한 국방부 보통검찰부 '공용서류무효 등의 피의사건'에 있어서,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보통검찰부 소속 검찰관 최우진이 2004. 6. 29에 내린 불기소처분(공소권 없음)에 대하여 불복하므로, 군사법원법 제 301조에 따라서 재정신청합니다.

※ 고발인이 검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수령한 날 : 2004. 6. 30

신 청 취 지

피고발인 고석에 대한 국방부 보통검찰부 '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'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'고석을 보통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한다'라는 재판을 바랍니다.

신 청 이 유

1. 국회에서의 증언 ·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'공소권 없음' 결정에 대하여

가. 검찰관의 공소권 없음 결정의 이유

이 건(사건번호 02년 형제128호) 고발과 관련해 국방부 보통검찰부 최우진 검찰관은 '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'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 바 국회의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하였습니다.

나. 공소권 없음 결정의 부당성

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(위증 등의 죄)에 따른 국회 위증 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기관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법리오해의 부당한 처분입니다.

기관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인 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”的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“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” 제15조(고발)의 경우는 국회의 고발의무를 규정하였을 뿐이지 친고죄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합니다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제71조 (고발)

① 제66조(벌칙) 및 제67조(벌칙)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

제14조 (위증 등의 죄)

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다만,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15조 (고발)

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·감정인 등이 제12조·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.

국회에서의 위증 등에 관한 공소제기 사례는 검찰의 다음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. 지난 2003년 12월 29일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조은석 검사는 피고인 이광재의 위증 혐의(2003형제133915, 134587호)와 관련해 국회의 고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위증죄의 경우 법규정상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조

항이 없어 공소제기는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조항이나 규정에 없는 경우 일반적인 법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비춰보면 위증과 관련한 국회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은 국회의 고발과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

2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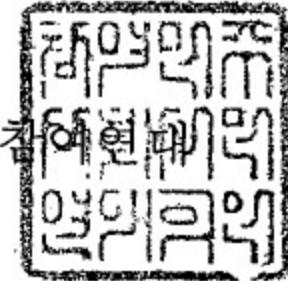
이상 군검찰관 최우진이 행한 불기소처분(공소권없음)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피고발인 고석에 대한 피의사건을 관할 보통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자료

1. 서울지방검찰청의 이광재에 대한 공소장 사본

2004. 7. 9

재정신청인(고발인)



고등군사법원 귀중